

보도시점 2026. 8. 19.(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6. 8. 18.(화)

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 기후위기 대응 및 인공지능 대전환 위해 물산업 분야 혁신기술·아이디어 발굴
- 10월 19일까지 참가자 모집... 아이디어사업화 2개 부문, 총 18개 팀 시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산업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6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6)' 참가자를 8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에 따른 물 문제 해결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 물·에너지 융합 등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적인 물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참가자는 물안전, 물환경, 물이용 등 물관리 전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 기반 물관리, 물·에너지 융합 기술 등 다양한 혁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1차(서류 평가) 및 2차(발표 평가)의 심사 과정을 통해 부문별로 선정된 9개 팀에게는 아이디어·사업계획의 고도화 및 발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부트캠프)이 제공된다.

이후 각 부문별 상위 4개 팀은 11월에 열리는 ‘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최종경연에 참가하게 된다.

공모전 수상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등과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상금이 지원되며, 지식재산처·창업진흥원 등 협력 기관들과 공동으로 특허·마케팅 전문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년간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통해 총 108개의 혁신 창업기업을 찾아냈고 이들 기업들은 매출액 1,476억 원과 투자유치 641억 원, 고용 창출 747명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작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워터트리네즈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 참여해 혁신상을 수상했다.

* 매년 1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기술 및 가전 박람회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는 물관리 혁신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대한민국 물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추진 계획(안).
2. 「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모집 공고문.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범직 (044-201-7631)
		담당자	사무관	박현숙 (044-201-7642)
	한국수자원공사 기후테크혁신처	책임자	처 장	이영우 (042-629-2500)
		담당자	부 장	임언주 (042-629-2510)

□ 추진 목적

- 물산업 분야 창의·혁신적 아이디어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 창업 공모전 개최 및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①모집공고	②단계별 평가	③부트캠프	④최종경연	⑤지원
공고 및 홍보 (온·오프라인)	서류·발표 평가(전문가)	아이템(기술) 고도화 멘토링	최종 심사 (전문가·국민평가단)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8.20~10.19	10.22~10.27	10.30~11.10	11월 말	~'27년 6월

※ 상기 일정은 상황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음

□ 행사 개요

- (행사명) 2026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 (일시·장소) '26. 11월 말, 서울(예정)
- (주최/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
- (후원) 지식재산처, 창업진흥원,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물포럼(KWF), UN SDGs협회
- (참석) 기후부, 후원·유관기관, 평가단(전문가·국민), 참가기업 등 100여명
- (주요내용) 최종 발표경연, 시상식, 제품 전시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02호

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Startup Water 2026) 참가자(팀) 모집 공고

물산업 혁신 및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혁신 아이디어 및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을 통해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6)」을 개최 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1 목 적

- ☐ 물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여 물산업 혁신창업 분위기 조성

2 개 요

- ☐ 접수기간 : '26. 8. 20(목) ~ '26. 10. 19(월) 18:00까지
- ☐ 신청대상 : 전 국민 * 부문별 참가자격 참고
- ☐ 신청방법 : 스타트업워터 홈페이지(www.startupwater.net) 접수
- ☐ 주 최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주 관 : 한국수자원공사
- ☐ 후 원 : 지식재산처, 창업진흥원,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 물포럼(KWF), UN SDGs협회

3 주요 내용

□ 참가 자격

○ 아이디어 부문

구 분		참 가 자 격
아이디어 부문	학생	▪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포함) - 팀장을 포함한 팀원도 적용
	일반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예비창업자 등

※ 1인 단독참가도 가능하나, 평가 단계에서 팀 구성 및 역량 평가 반영

○ 사업화 부문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창업여부 적용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범위(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사업개시일의 적용기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 2개 이상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일 기준

【참가 제외대상】

- 동일(유사) 아이템으로 '20~'25년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또는, '26년도 타 기관(단체) 주관의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팀)

※ 팀장과 팀원을 포함하여 신청서상 기재된 참여자 수상내역 모두 해당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특허 검색(www.kipris.or.kr)에서 아이템 중복 확인 필수

- 본 대회 추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아이템

【서류평가 면제 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 AX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물’ 관련 수상자(팀)

□ 공모 분야

○ 아래 예시 분야 등물관리 분야 전반

구 분	세부 분야(예시)
물안전	▪ 기후재난 대응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관리 - 빗물받이 등 도시침수 대응 인프라 고도화 - AI·디지털트윈 기반 댐·하천 운영 최적화 - 수자원 확보 및 활용, 물재해(가뭄, 홍수) 대응 - 홍수저감 인프라(저류지·방수로 등) 기술 - 스마트 기술기반 물관리 및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시설 안전관리 등
물환경	▪ 수질·수생태 보전과 자원순환형 물환경 조성 - 물환경(녹조 등) 예측·저감 기술 및 수생태 복원 기술 - AI 기반 수질 예측·분석 기술 - 하·폐수 고도처리 및 자원화(유가물질 회수,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경보 시스템 개발 등
물이용	▪ 국민과 산업의 안정적 물이용 보장 및 물산업 혁신 - 생활·공업용수 절수 기술 및 대체 수자원 개발 - 초순수, 해수담수화 및 물재이용 기술 - AI·디지털트윈 기반 물공급망 운영 최적화 기술 - 미세플라스틱·PFAS·중금속 등 신종 오염물질 제거 기술 - 물·에너지 융합기술 - 물에너지(수력·수상태양광·조력·수열·그린수소 등) 이용 기술 - AI 데이터센터 물관리, 도시 물순환 개선에 관련된 기술 - 국가 탄소중립도시 및 스마트시티 조성 등 관련 기술 중 물관련 기술 등

※ 정책 제언 또는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

□ 지원 및 시상 규모

○ 아이디어 부문 : 총 9팀 (총 상금 17백만원)

구 분	훈 격	시상규모(수량)		부 상
		학생	일반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개 팀		5백만원
최우수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개 팀		3백만원
우수상	창업진흥원 원장	2개 팀		각 2백만원
장려상	KWP회장, KWF총재, UN SDGs협회장	5개 팀 내외		각 1백만원

※ 상금에서 세액 공제 후 지급

※ 아이디어부문 장려상의 경우 선정결과에 따라 시상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사업화 부문 : 총 9팀 (총 상금 85백만원)

구 분	훈 격	시상규모(수량)	부 상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개 팀	사업화 자금 각 2천만원
최우수상	지식재산처장	1개 팀	
우수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개 팀	
장려상	KWP회장, KWF총재, UN SDGs협회장	5개 팀 내외	각 1백만원

※ 우수상 이상은 사업화자금 전액 지원, 장려상은 상금에서 세액 공제 후 지급

※ 사업화부문 장려상의 경우, 선정결과에 따라 시상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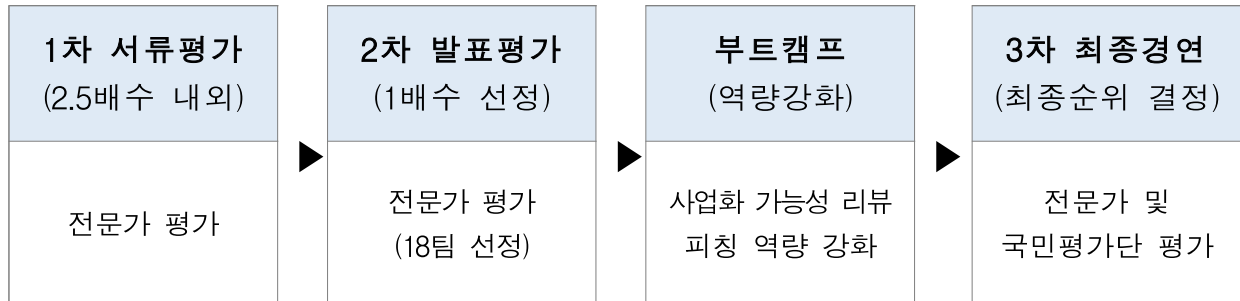
□ 입상팀 인센티브 (공통)

○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스타트업* 신청 시, 서류전형 면제

* (지원내용) 멘토링, K-T/B 연계 지원, 투자유치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등

4 심사 절차

□ 심사절차 : 총 3단계 평가(서류→발표→최종) 및 부트캠프(BOOT CAMP) 운영



※ 2차(발표평가) 통과팀은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최종 경연에서 순위 결정

○ (1차 서류평가) 공모 신청 시 홈페이지로 제출된 제안서(아이디어 부문) 및 사업계획서(사업화 부문)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

○ (2차 발표평가) 서류평가 선정팀을 대상으로 발표(현장) 평가

※ 서류평가 선정팀 대상으로 발표 안내 예정이며, 참가팀의 팀장(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발표시간 15분 분량의 PPT(또는 PDF) 파일 제출

○ (부트캠프) 2차 발표평가 통과 팀을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 리뷰 및 피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3차 최종경연) 2차 평가를 통과한 부문별 평가점수 상위 4팀(총 8팀) 대상으로 발표경연 및 순위 결정(아이디어 부문 4팀, 사업화 부문 4팀)

※ 최종경연 진출팀 대상으로 발표 안내 예정이며, 참가팀의 팀장(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발표시간 5분 분량의 PPT(또는 PDF) 파일 제출

□ 심사항목 : 기술의 우수성,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 및 혁신성, 물 관련 사업 아이템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 등

5 추진 일정(안)

진행 절차		추진 내용	일정
아이디어	사업화		
↓			
사업 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26. 8. 20(목) ~
↓			
신청·접수		▶ 참가신청 : www.startupwater.net	~ ‘26. 10. 19(월)
↓			
1단계 서류평가		▶ 혁신성, 적합성 등 서류평가	‘26년 10월
↓			
2단계 발표평가		▶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 발표평가	‘26년 10월
↓			
3단계 부트캠프 (역량강화)		▶ 역량강화 액셀러레이팅 : 사업화 점검 및 피칭 역량 강화	‘26년 10~11월
↓			
최종경연 및 시상식		▶ 아이디어·사업화 부문 최종 경연 : 전문가 + 국민평가단 평가	‘26년 11월 말
사업화 지원		▶ 최종 입상팀 사업화 지원	‘26년 12월 ~ ‘27.6월

※ 상기 일정은 상황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6. 8. 20(목) ~ 2026. 10. 1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공모전 웹사이트 접수(<http://www.startupwater.net>)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2~3일 전에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 통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공고문 붙임 양식1) - 참가서약서 1부 (공고문 붙임 양식2)
아이디어 부문	- 아이디어 부문 신청서 1부 (공고문 붙임 양식3) - 아이디어 부문 제안서 1부 (공고문 붙임 양식4)
사업화 부문	- 사업화 부문 신청서 1부 (공고문 붙임 양식5) - 사업화 부문 사업계획서 1부 (공고문 붙임 양식6)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제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진행 시 제반서류의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K-water 기후테크혁신처 (042-629-2512, 2513)

- ☐ 모집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공모전 신청자에게 있음
- ☐ 모집 공고문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이 제한될 수 있음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입상팀 인센티브는 별도의 심의절차(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 선정하며,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 별도 심의 절차에서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미충족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 수상기업은 주최·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별첨

창업 여부 기준표

□ 창업 여부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신청구분	상세 구분			창업 여부
개인기업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 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업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 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 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임원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		창업 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회사형태 변경	동종업종 유지		
		이종업종 변경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 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 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 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